

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

1. 제 안 경 위

- 발 의 자 : 유정희 의원
- 의안번호 : 제1677호
- 발의일자 : 2024년 4월 1일
- 회부일자 : 2024년 4월 8일

2. 제 안 이 유

- 현재 서울특별시는 서울동물복지지원센터를 통해 유기동물의 임시보호와 입양을 진행하고 있음. 유기동물의 경우 질병 등에 노출되었을 확률이 상대적으로 크므로, 임시보호자가 느끼는 의료비 부담이 있는 것으로 확인됨.
- 이에 동물보호센터에서 가정으로 입양 전 임시보호 가정에서 보호받게 되는 유기동물의 의료비 지원 근거를 명시하여 임시보호에 대한 진입 장벽을 낮추고, 동물보호 및 생명 존중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함.

3. 주 요 내 용

- 가. 유기동물의 임시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15조의2제1항).
- 나. 임시보호 동물의 의료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15조의2제2항 및 제3항).

4. 참고 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동물보호법」

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(비대상사유서) 참조

다. 기 타 : 신·구조문 대비표 참조

5. 검토 의견

가. 개요

-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동물복지지원센터에서 동물이 입양되기 전에 임시보호 가정에서 보호받게 되는 경우 해당 동물의 의료비 지원 근거를 명시하여 임시보호에 대한 진입 장벽을 낮추려는 것임.

나. 검토의견

- 서울시는 “유기동물 응급치료센터 운영사업”을 통해 유기동물 구조단이 구조한 동물과 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 중인 유기동물 중 입양·기증예정인 동물을 보호·치료하고 있으며, 서울시와 자치구에서 의뢰하는 피학대 동물과 사육포기 동물 등의 치료를 지원하고 있음¹⁾.
- 응급치료된 동물과 입양이 되지 않은 유기동물은 동물보호센터²⁾에서 보호하게 되고 이후에도 일정 기간 입양으로 이어지지 않게 되면 보호비용, 인력, 시설 등의 한계로 인해 「동물보호법」 제46조제1항 및 「동물보호법 시행규칙」 제28조제1항제3호³⁾에 따라 동물의 고통을 최소화하는 인도적인 방법으로 처리하고 있음.
- 동물복지를 위해서는 입양률을 제고하는 것이 급선무로 판단되는 상황에서 서울시는 입양 전에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가정에서 임시로 보호할 수

1) 사업목적 : 24시간 체계 유기동물 응급치료센터 운영으로 응급동물, 입양대기동물의 치료를 지원하여 입양률을 높이고 폐사 및 안락사 최소화

사업예산 : 2억 5천4백만원, 사업목표 : 240마리 의료지원

2) 동물보호센터는 「동물보호법」 제35조 및 「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」 제8조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서울시에 총 29개소에 있으며, 동물구조, 보호, 입양, 인도적 처리 등을 담당하고 있음
서울시 직영 동물복지지원센터(3개소: 마포구, 구로구, 동대문구), 1개소 예정(강동구)
자치구 지정·위탁업체(26개소 운영)

3) ‘기증 또는 분양이 곤란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’로써 서울시는 수용능력, 분양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보호·관리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개체에 적용하고 있음

있는 정책을 추진⁴⁾하고 있으며, 임시보호 정책 추진 기간 동안⁵⁾ 안락사 비율은 감소하여⁶⁾ 사업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.

- 따라서 안 제15조의2와 같이 유기동물 임시보호자를 대상으로 동물치료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임시보호자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유기동물 입양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로 판단됨.
- 다만, 임시보호자는 입양예정자가 아니므로 일정시간 이후 해당 동물이 또다시 인도적 조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입양으로 이어지는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을 것이며, 이와 함께 자원봉사자를 활용하는 ‘임시보호’에 대한 명확한 정의⁷⁾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.

4) 2024년 기준 임시보호 봉사자는 530명 참여

5) 민·관협력 유기동물 임시보호 사업 실적('20~'23) : ('20) 151마리, ('21) 192마리, ('22) 95마리, ('23) 100마리

6) 인도적 조치 비율('20~'23) : ('20) 16.1%, ('21) 9.8%, ('22) 14.0%, ('23) 12.%

7) 유기동물의 정서안정과 사회화 적응, 치료 등을 위하여 유기동물의 분양·기증전에 일시적으로 가정 등에서 보호하는 자원봉사의 종류로 인식됨